

깍뎀기뿐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어떻게 살릴까

4년전 제정된 이후 기금조성도 안돼 사문화... 실천 뒤따르는 실효성 있는 법개정 있어야

김재윤

한국출판연구소 연구부장

열악한 독서환경, 취약한 자본구조, 전근대적인 유통구조 등으로 성장은커녕 현상유지에 급급해오던 출판산업이 IMF 한파까지 몰아치자 그야말로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출판산업 위기 극복 방안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 가운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도서관 활성화와 독서진흥이다. 즉 1차적 수용자로서 도서관의 역할이 출판산업의 토대가 된다는 점이며, 국민 독서문화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환경이 조성되고, 책 읽는 국민이 많아져야 출판문화를 살릴 수 있다는 견해다.

시행되지 않은 사문화된 법

이미 4년 전 법률 제4746호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제정되었다. 4년 전에 도서관과 독서 진흥을 위해 법까지 제정되었다면 출판계는 불황이나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호황을 누리거나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출판산업 토대까지 흔들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 않은가? 결국 이 법은 제정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사문화된 법이었으며, 책의 해 기념 조형물에 불과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 첫째로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9조에 보면 "정부는 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 시설 및 자료의 확충, 사서직원의 자질향상, 연구, 기타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그렇지 현재 이 기금은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다.

정부에서 관리·운용중인 기금은 정부관리기금 38개, 민간관리기금 35개이다(96년말 기준). 38개 정부관리기금 가운데 기금 관리 기본법 적용 대상은 32개이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도 기금관리 기본법 적용대상이다. 정부가 각종 기금에 출연한 액수를 보면 1조원이 넘는 것도 양국증권관리기금, 농지관리기금, 산업기반기금 등 10여개나 된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보다 1년 앞서 설치된 정보화 촉진기금은 9697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청소년 육성기금은 948억원, 과학기술 진흥기금은 4515억이나 된다. 다

이미 4년전 제정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은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채 사문화돼 있다. 기금이 조성되지 않으니 예산이 없고 예산이 없으니 활동이 없다. 이 법에 명시된 대로 정부는 국고에서 기금을 출연해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지도록 실효성 있는 법체제로 개정해야 한다.

른 기금들은 원활히 조성되고 있는데 정보와 문화의 토대가 되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은 왜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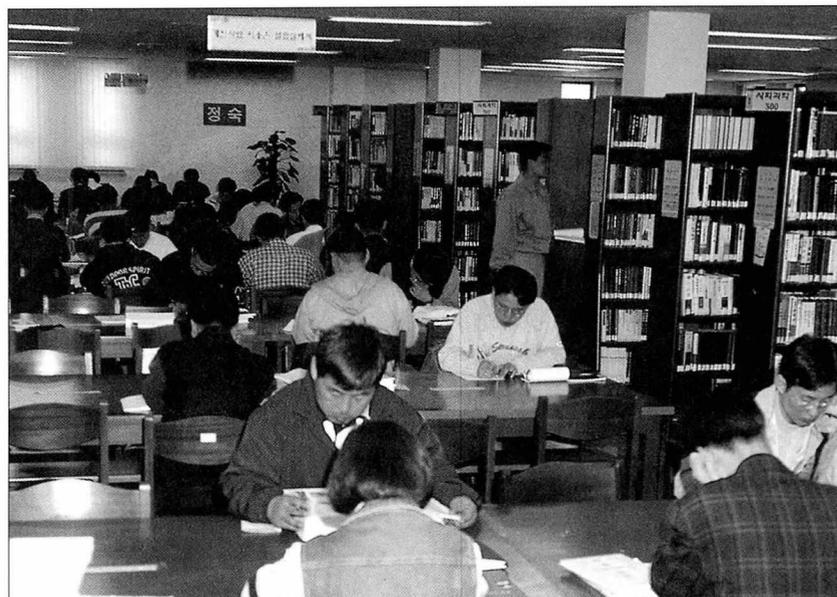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정부 출연금, 법인·단체·개인의 기부금, 기금 운영에서 생기는 이익금,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수익금으로, 시행령에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문화체육부 장관이 정하는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제1조의 목적대로 도서관 및 문고의 육성과 독서진흥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도록 조속히 3000억원 정도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도서관 진흥법에 명시된 대로 정부는 국고에서 기금을 출연해야 하고, 한국마사회 기금·문예진흥기금·청소년육성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정보화 촉진기금 등 타기금의 전입을 적극 모색해야 하며, 기업의 기부를 장려해야 한다. 또한 언론 캠페인 등을 통한 국민 모금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겠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이 전혀 조성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10조에 규정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도 1년에 1, 2회 정도 회의를 열어 도서관 발전, 도서관 협력망 운영, 독서진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산이 없으니 활동이 없을 수밖에 없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진흥책 이뤄야

앞으로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는 실질적이며 체계적인 독서진흥 정책을 결정, 조



실천이 뒤따르지 못하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실질적인 시행이 필요하다.

정, 집행, 평가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상설위원회로 확대, 개편되어야 한다. 또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은 지방도서관의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 중앙과 지방에서 체계적으로 독서진흥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39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투자기관 및 관리단체에 문고 설립을 적극 장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단체장들은 읍·면·동에 공립문고를 설립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종업원 300명 이상), 주거단지(500세대 이상), 건축물 및 공공이용시설에 사립문고 설립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96년 12월 현재 전국의 문고 총 1348개 가운데 공립은 63개에 불과하고 사립이 1285개이다. 이들 문고의 장서수는 평균 2708권에 불과하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문고의 설립, 운영, 자료구입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묻고 싶다.

독서진흥법 제9장에는 독서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까지 명시되어 있는데 독서진흥은 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유지는 퇴보다. 모두가 앞서가는데 자신만 제자리 걸음을 한다면 앞서간 사람의 거리만큼 퇴보하게 된다.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유지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분명 퇴보다.

한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면 문화

관광부는 내무부 산하 공공도서관을 지도, 감독할 수 있고, 사립도서관에 대해 지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은 교육부 소관으로 문화관광부가 지도, 감독은 물론 제정업무지원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이렇듯 이원화된 도서관 행정체제는 효율적인 도서관운영에 장애가 된다. 문화관광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현상유지 정책은 '퇴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전 10장 54조 가운데 실질적인 독서진흥에 관련된 조항은 1개장, 5개조항 정도에 불과하다. 그나마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도 실천이 따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제도가 무슨 소용이 있으리라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법체제로 개정하여 실질적인 독서진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다. 국민의 정부는 말 그대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 문화와 지적테크놀로지가 국가발전의 중심이 되는 21세기에는 창의력과 적응력이 국가발전의 척도가 된다. 창의력과 적응력은 책에서 얻을 수 있다는 인식에서부터 독서진흥정책이 출발해야 한다. 좋은 책이 뿔뿔이 꽃힌 청와대 문고에서 책을 읽고 있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또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꼼꼼히 살펴보고 실질적인 독서진흥책을 펴는 문화부 장관을 기대해 본다. ❖